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작업중 피재되어 제4-5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적출술 후 치료 종결해 장해보상을 청구한 결과 제12급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재심사 청구한 결과 제8급으로 정정됐습니다.

A 피재근로자의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내용은 '제4-5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제4-5요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적출술 후 상태로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지속되며 요부의 운동장애 및 완고한 통증을 호소함' 이고, 군 복무중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궁절제술을 시행받고 의가사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로 인한 상병의 악화에 대해서는 장해보상 결정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육군에서 병상일지를 확보하고 심사청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해 특진한 결과 "근전도검사상 요추부 신경근병 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좌측하지의 위약소견이 보이며, 요추부 관절가동범위는 굴곡 15도, 신전 5도 등으로 관절움직임에 제한을 보임"의 소견으로써, 피재근로자는 군복무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완전 척추궁절제술을 시행받고 의가사 제대를 했으나 이후 증상이 호전돼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해오던 중 산재사고로 인해 다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재발, 2차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적출술을 시행했다. 그리하여 요통 및 양하지방사통이 지속되며 요부의 운동장애 및 완고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주치의와 특진의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에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이 뚜렷하게 남은 사람에 해당돼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됨이 타당하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는 임대인 乙에게 임차인 甲의 농지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보증을 섰고, 그 후 甲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지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乙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위 농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만원 정도인데 만일 甲이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보증인인 저도 甲과 乙의 위 약정에 따른 금 1천만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요?

A 甲과 乙의 위와 같은 약정은 농지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시 손해에 대한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데,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보증인의 관여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보증인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느냐 문제됩니다.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해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9.94다38250)

따라서 귀하도 위 훼손된 농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겠지만 귀하의 관여없이 甲과 乙 이 약정한 금 1천만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박문우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여름철 건강관리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다. 얼마 전까지도 아침저녁에는 선선했지만, 밤에도 더운 바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년 중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 오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특히 여름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름철에 빈발하는 질병에는 계절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여름을 타는 병, 더위로 인해서 더위를 먹은 병, 냉방을 너무 과다하게 하여 발생하는 냉방병, 찬 음식을 과하게 먹어서오는 복통설사병, 또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등이 있다. 이를 순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여름을 타는 병을 한방에서는 주하병(注夏病)이라 하는데, 여름이 시작하는 7월 초나 중순에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무력해지며, 특히 기운이 없다. 음식의 맛을 별로 모르고, 식욕 또한 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에 열 기운을 느끼기도 한다.

주로 원기 부족한 상태에서 과로를 하거나 하여 계절의 변화를 몸에서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치료는 원기를 보충해주는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맥문동, 오미자를 추가한다.

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을 서병(暑病)이라 하는데, 크게 양서(陽暑)와 음서(陰暑)로 나눠 치료한다.

양서란? 움직이면서 병에 걸리는 경우를 의미하며 더운 날씨에 더위를 무릅쓰고 작업을 하거나, 장시간의 보행 또는 장거리를 달리거나, 작업환경이 더운 곳에서 일하는 분에게 많이 나타난다. 즉, 우리가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병, 일사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높은 열이 나며, 가슴이 답답해지고 계속 냉수를 찾게되고, 입이 계속 마르게 된다. 또한 땀이 줄줄 쏟아지고, 피부도 뜨거운 열감이 있다. 반면에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싫어진다.

이러한 증상을 계속 참고 더위에 노출시키면 혹 졸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치료는 서열(暑熱)을 빨리 내려주어야 한다.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이나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을 증상에 따라 사용한다. 〈다음호에 이어〉

☞문의:포천한의원(031-535-2536)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이문환

Q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한데 저는 어떤 부모인지 스스로 점검할 자료는 없나요?

A 〈지난호에 이어〉 13. 외출할 때 복장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신다.

14. 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신다.

15. 남들에게 내 칭찬을 하신다.

16. 스스로 생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지도하신다.

17. 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여드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

18. 나에게 늘 다정하게 말씀하신다.

19.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적다.

20.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21.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22.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신경쓰지 않는다.

23. 일상생활에서 "~하지마라" 보다 "~해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24. 나에게 "~안 돼" 또는 "~안 된다"의 말씀을 자주 하신다.

25. 내가 부모님의 잘못된 일을 비평해도 받아주신다.

26. 내 일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일도 잊어버리곤 하신다.

27.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28.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29. 내가 할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주신다.

30.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31. 내가 겁이 날 때나 걱정이 있을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다.

32. 집안일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편이다.

33. 용돈의 사용에 대해서 간섭하신다.

34. 불편해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게끔 해주신다.

35. 학원을 선택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신다.

36. 한 번 지시 또는 명령한 것은 꼭 이행하도록 강요하신다.

37. 내 일에 퍽 흥미를 갖고 계신다.

38.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신다.

39.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

40. 친척들의 가족행사에 되도록 참여하도록 권유하신다.

이 검사결과로는 우리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위의 문항 중 1번이나 2번, 즉 '대체로 같다'나 '거의 같다'로 표기해야 하는 문항은 2, 4, 6, 8, 10, 12, 14, 15, 16, 18, 21, 23, 25, 29, 31, 34, 35, 36, 37, 40번 입니다. 이와같이 표기를 했다면, 현재의 양육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포천 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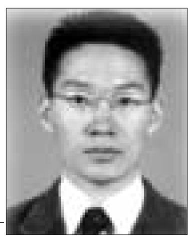

포천의료원 3내과 과장 양동훈

우리 주위에는 각종 위장검사에도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안되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입맛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상당수가 신경성위장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많으며 무더운 날씨와 공해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많이 발생한다. 증상은 장기간에 걸쳐 소화가 안되고, 명치끝이 아프며,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며,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장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이 없으면 '신경성' 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신경성위장병에는 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위장장애, 불안증이 위주인 건강염려증, 그리고 위장의 기능자체가 저하되어 오는 기능성 위장장애, 우울증이나 간질 등의 증세로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신경성위장병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내과의사가 보는 환자의 반수이상은 신경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에 한국인에서는 특히 위장증상이 많다.

신경성위장병 치료는 우선 식습관을 잘 조절해야 한다. 천천히 잘 씹어 먹을 것과 식사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을 우선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부근육을 강화하고, 독한 술이나 담배,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건강염려증인 사람들은 범람하고 있는 건강 관련 책들을 가급적 보지말고 운동을 통해 스스로 극복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태도를 점검해 지나친 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없었나를 반성하고 이를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서 불안, 우울을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얼마전 사무실을 새로 개업하면서 사무용 집기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구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저는 어떻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법에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공급 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소매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공급 받는 자는 그것을 매입세액공제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는 전산뿐만 아니라 수기나 명판에 의한 것도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명의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 종업원 명의 카드도 가능하나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02-404-9944)

원당 장어구이, 동해 회 수산에서 각종 만남을…

- 산지에서 최고의 상품만을 고집, 맛 · 영양 · 질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곳 -

※특선메뉴 : 조개구이, 다양함/푸짐함/신선함/저렴함을 두루갖춘 곳,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장어 1kg 3만원
광어 2만5천원
빠가매운탕 3만5천원
우럭 2만원
잡고기매운탕 2만5천원
세꼬시 1만5천원
미꾸라지 3만원
줄돔 싯가
메기 2만원
도다리 싯가
킹크랩 각종 해산물
산낙지 1만원
멍게 1만원
해삼 1만원
오징어 1만원
순대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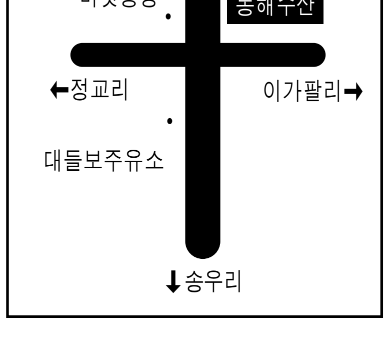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500-1 / 전화 : 031)544-9098 / 대표 : 김 건 환